

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최초배중개정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 250 호
- 다. 제출일자 : 2003. 6. 9
- 라. 회부일자 : 2003. 6. 11

2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·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시장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여 따라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기관명을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절차

- 가.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(2)부시장에서 행정(1)부시장으로 변경함(안 제3조제2항)
- 나.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산업경제국장→산업국장, 건설국장→건설기획국장 등으로 변경함(안 제3조제3항1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시행령·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
- (1) 찬·구조론대비표 : 별첨
- (2) 일반제고 :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여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여 의하여 생략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임 명)

-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최초배중 개정안여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 -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3. 6. 9.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50호로 2003. 6. 11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
 -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시행위원회 위원장의 직명을 현행 부시장의 사무분장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등, 지방자치법시행령·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시장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여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 - 서울시에서는 2003. 1. 10 교통업무를 행정2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의 사무로 분장하고 교통관리실을 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영시장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.
 - 당시 부시장의사무분장변경안에 대하여는 근거법규여 위반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(2003. 4. 4)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다만 교통업무를 행정(1)부시장 사무로 분장한 사항여 대하여는, 교통업무가 건설, 도시계획, 주택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합리적 업무조정과 부서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는 행정(2)부시장의 사무로 분장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타당적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최초배중개정안여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최초배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최초배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행정(2)부시장"을 "행정(1)부시장"으로 하고, "교통관리실장"을 "교통정책보좌관"으로 하며,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산업국장, 도시계획국장, 건설기획국장, 정책기획관

부 직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02회계년도교통관리일반회계 및 교통사업·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
세입·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

I. 일반회계 세입·세출결산

1. 세입결산

가. 세입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%인 35,11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·도비 반환금수입임

2. 세출결산

가. 2002년도 세출결산 총액 1,190,187,930천원
 - 당초예산 1,134,664,067천원
 - 전년도 이월액 2,778,729천원
 - 예비비 52,745,144천원

나. 예산집행

- 지출현행위 1,190,178,029천원
 - 지출액 1,187,597,277천원(예산현액대비 99.8%)
 - 다음연도이월액 2,580,752천원(예산현액대비 0.2%)
 - 불용액 9,901천원

다. 예비비 지출

- 지출결정 52,745,144천원

※ 지출결정내역

-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소요경비 13,500천원
 - 운수업체별경지원 52,731,644천원
 - 집행 50,154,491천원
 - 이월 2,580,752천원
 - 불용 9,901천원

라. 이월사업비(사고이월)

- 이월내역 : 운수업체(택시)유류보조금 2,580,752천원

마. 불용

- 불용총액 9,901천원
 - 불용사유 : 예산집행잔액 9,901천원

II.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

1. 세입결산

가.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교통관리저장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성

나.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총 461,413,31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1%인 420,016,987천원을 징수